

심의위원의 위촉동의에 관한 사항,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언론보도내용의 국가, 사회,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자체적으로 혹은 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심의기준의 제·개정 기타 시정권고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전국에 16개소(서울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부는 조정 내지 중재 신청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조정심의본부(조정1~2팀, 심의팀),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법무상담팀, 교육홍보팀, 조사연구팀), 운영본부(기획혁신팀, 예산회계팀, 총무팀)등 2본부 1센터 9팀과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IV.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

인간은 정보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언론은 정보교환의 최고의 수단이다. 그렇기에 언론은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은 인류의 삶을 비옥하게 하는 일을 맡는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언론은 언론의 공적인 책임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권력기관으로부터 압력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헌법정신은 어디까지나 기사로서의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중립성, 자율성, 형평성, 정의성 등의 기준과 부합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기준들과 부합되지 않는 기사는 인간의 삶을 비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게 하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자들은 맑은 양심, 성숙한 양식 그리고 대낮같이 밝은 정직을 생명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발표(방송)하여야 한다.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기사는 생명이 없는 죽은 기사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생명이 출렁이는 기사를 통해 언론기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언론기자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외압 및 이권에 굴복하거나 야합하기가 쉽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무기로 삼아 탈선 및 탈궤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두된 것이 언론의 공적책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 된지 4반세기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 무엇보다 언론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막강한 힘을 가졌다하여 권력의 4부로 일컬어지는 그 힘은 언론이 가진 보도의 독점성 및 과급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양심, 양식, 전문성, 사실성, 정의성에 입각한 양질의 기사들 때문이었음을 알게 한 점이다. 그렇기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가치(소식전달+인격권보장)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일을 담당할 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은 제고 및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이다.

1.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강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보다는 조정과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 정당원, 공직선거후보자, 현직언론인들을 배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제1항에서와 같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성과 독립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분쟁해결기구로서 출범하였고 언론피해구제법 하에서도 분쟁해결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다. 분쟁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쟁해결 기구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중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결정을 이해관계자(당사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기관인 점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는 필수조건이 된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i)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중재위원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ii)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원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하며, iii) 중재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분쟁전반에 대하여 법원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언론은 사회목탁인 점에서 국민의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실에 근거함은 물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여야 한다. 어떤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기관을 옹호하는 기사나 보도는 절대 금물이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회나 국가는 어느 사회나 국가보다 건강하고 인간들의 삶은 더 없이 비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과 자세는 기자들이 스스로 정립하고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정확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소식 생산자 및 보급자로서의 기자상(記者像) 정립이야말로 기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지이고 자존심인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기자상을 전제로 한 국민보호용 장치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장치를 빛나게 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언론다운 언론의 자리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언론과 중재위원회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지도 향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구로 설립 된지도 25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이 주식(主食)처럼 매일 대하는 것이 언론인데도 국민들은 자기들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생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듯 국민의 관심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 자체의 속성(분쟁해결기관)탓도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사의 소극성에 기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영역을 알리는 데에 소홀했다. 20

10) 처음 제정된 1980년 12월 31일의 언론기본법에서는 반론보도 청구권(당시 명칭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고 반론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5. 1. 27.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필요적 전치규정이 선택적 청구(언론중재위원회로 갈수도 있고 법원으로 갈 수 있는)로 변경되었다.

여 년간 신문에 칼럼을 쓴 사람인데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물론 본인의 정보부족 탓도 있지만)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하고 중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일에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소극성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알리는 안내지를 비치하는 일, 도나 시·군 회보에 게재하여 국민이 알게 하는 일, 신문이나 방송에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및 결정 내용’을 보도케 하는 일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언론사에서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언론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으니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주문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그렇기에 언론사는 겸허한 자세로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고압적, 권위적 자세로 고집을 부리거나 책임 회피하려는 판단이나 행동은 금물이다. 언론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지탱되는 즉 독자들이 재산이고 독자들이 실질적인 주주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나 제3자의 주장을 저항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독자관(讀者觀)이 이럴진대 같은 맥락에서 독자나 시민들의 청구사건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와도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분쟁사건과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마땅히 언론에 보도하여야 한다.

3. 성숙한 판단력의 구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피해는 i)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ii)동시다발적이며(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도 연달아 보도), iii)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고, iv)법적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이며(보상액 낮게 책정), v)언론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치명적), vi)고위관료를 비롯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피해에 대해 취약하며, vii)일반적으로 국민이나 독자들은 언론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¹¹⁾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즉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분쟁대상의

11) 김창룡, “언론피해구제제도 활성화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4, 5, PP. 1~3.

핵심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사실성, 객관성, 정의성, 중립성 등의 기준 위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위원들의 성숙한 판단력은 언론사들에게는 언론보도의 공적 책임에 대한 지침으로서 구실을 하게 될 것이고 독자나 국민들에게는 언론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의 이념을 구현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나 조정의 현장에서 빛나간 보도나 조정으로 인하여 언론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언론중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용어로는 ‘사실’과 ‘진실’을 들 수 있다. 흔히들 사실과 진실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2분법적 관점에 길들여져 있다. 이러한 2분법적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은 하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지 진실은 사실이 사실일 수 있는 요건일 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이 사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실이 아닌 사실은 사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백만 원을 건넸을 경우 무슨 명목(동창회비, 차용한 돈의 변제 등)으로 주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사작성상의 필수요건이다. 만일 내용이 없이 돈만 건네 준 것으로 보도되었다면 이는 진실 문제가 아니라 보도기사로서의 요건문제인 것이다.

분쟁대상에 대한 빠른 판단은 본질에 눈을 맞추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4. 접근성 용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을 비롯 이용필요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민간 사회단체들이 자리한 곳이나 대학가 그리고 공원근처, 지방자치단체 정문 앞 등이 이상적인 장소이다. 또한 신청방법도 단순화 할 것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중재신청도 과거에는 방문접수로 한정하였던 것을 언론관계법을 단일화하면서 서면, 구술,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발전적 변화이다. 두말할 것 없이 신청방법은 신청희망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중심의 운영방법이다. 편리한 장소, 손쉬운 절차,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상시 신청가능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

고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상응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에 대하여 언론사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5.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

중재위원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만큼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기초 지식, 언론보도의 기사로서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론사의 사명, 국민의 기본권, 시비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신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인사들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다만 찾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간 언론중재위원으로 추천되어 위촉된 사람들 중에는 위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언론중재위원의 위촉과정이 행정기관 편의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언론중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임의적 추천과 문화관광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하여 위촉되었다. 그렇기에 광역자치단체와 왕래가 없거나 미미한 인사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천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의 의도에 의하여 다른 인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위원이 되곤 하였다. 중재위원의 자리는 전리품이나 정부기관의 하사품의 자리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임무와 위상을 위해서도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언론중재위원도 언론인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²⁾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자. i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iii)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언론사의 취재·보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자. iv)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다. 언론중재는 글자 그대로 언론보도에 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론에 대하여 남다른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을 무기로 삼아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할 중재활동에서 언론사의 편을 들 수 있다는 가정을

12) 상계논문, P.17.

배제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라도 편견을 가지고 중재업무에 임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목적에도 위배됨은 물론 피해자를 억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분포 상 언론인 출신이 많은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규정 중 제3호의 규정은 제4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신청층의 확대

충북중재부의 경우 과거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는 층은 언론사와 공공기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즉 언론사 대 언론사, 언론사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기관내지 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언론조정 신청인 층이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론 언론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청이 부재하거나 극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권위와 막강한 조직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언론사와 대항하기 쉬운 반면, 일반인은 언론사의 높은 문턱(영향력, 파급력, 보복성)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탓과 아직까지 개인들의 권리주장에 소극적인 풍토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권리의 창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수비적, 제재적 위치(자세)에서 선제적, 보호적 자세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신청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사실에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전화를 비롯한 의사전달 통로를 이용, 언론중재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계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신청층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탄생 근거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기구 등을 살펴 본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에 관하여 논급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치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